

의안번호	제791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1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이종갑,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 (안 제2조)
-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잡고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7조)
- 치유농업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11.
- 협 의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기반 조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법령 발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육성지원) 및 제7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5~2029년(5년)
-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치유농업센터 설치·운영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1개소) : 60백만원/년
 - 도시근교 치유농업 쉼터(1개소) : 200백만원/년
 -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1개소) : 80백만원/년
 - 치유농업센터 운영 활성화(1개소) : 80백만원/년
 -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5개소) : 100백만원/년 *개소당 20백만원

- 산출결과 : 2025~2029년까지 5년간 도비 505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 국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도시근교 치유농업 쉼터 : 국비 50, 시군비 50%
-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 국비 50, 시군비 50%
- 치유농업센터 운영 활성화 : 도비 1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2,600,000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도시근교 치유농업 쉼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치유농업센터 운영 활성화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2,600,000
의존 재원	소 계	164,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820,000
	보조금 (국비 31.5%)	164,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820,000
자체 수입	소 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지방세 (도비 19.4%)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시·군비(41.0%)		213,000	213,000	213,000	213,000	213,000	1,065,000
기타(8.1%)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6. 작성자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농촌자원과장 피정의